

2027학년도 대구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

2027학년도 대구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교 육 감

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단위: 명)

연번	선발예정 과목	선발예정 인원			연번	선발예정 과목	선발예정 인원			비고
		일반	장애	소계			일반	장애	소계	
1	국어	19	1	20	14	영어	19	1	20	
2	수학	18	2	20	15	기술	8	1	9	
3	물리	11	1	12	16	정보·컴퓨터	8	1	9	
4	화학	11	1	12	17	전기	2	-	2	
5	생물	2	-	2	18	전자	4	-	4	
6	지구과학	2	-	2	19	기계	5	1	6	
7	일반사회	16	1	17	20	화공	1	-	1	
8	역사	9	1	10	21	보건	18	2	20	
9	지리	2	-	2	22	사서	2	-	2	
10	도덕·윤리	13	1	14	23	전문상담	11	1	12	
11	체육	19	1	20	24	영양	8	-	8	
12	음악	3	1	4	25	특수(중등)	2	-	2	
13	미술	2	-	2						
합 계							215	17	232	

※ 장애인 구분 선발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 상기 법령에 의한 장애인 선발 시 최종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 인원
미달될 경우에도 선발예정 과목별 일반 응시자에서 충원하지 않습니다.

※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교과 교사는 유치원, 초등, 특수, 중등을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의 임용은 우리 교육청의 임용 계획에 의합니다.

2 응시 자격

가 선발분야별 응시 자격

선발분야	응시 자격
중등학교 교사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7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특수학교 (중등)교사	전공 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 자격증 소지자(치료교육, 재활복지, 직업교육 포함) 【2027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 교사(이료)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보건교사	보건·양호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7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사서교사	사서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7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전문상담 교사	- 전문상담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7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전문상담교사(초등, 중등, 특수) 자격증 소지자 -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 ※ 상담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 대상자가 아님
영양교사	영양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7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장애 구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 구분 선발예정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7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 장애 구분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이어야 함. - 장애인은 구분선발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으로 지원할 수 있음. ※ 기타 시험 시행의 일반원칙 및 합격자 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 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재외국민인 외국 영주권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 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나 분리·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 안내

선발예정 과목	응시 가능 과목	선발예정 과목	응시 가능 과목
도덕·윤리	도덕·윤리, 윤리, 국민윤리	지구과학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역사	역사, 사회(역사)	영어	영어, 외국어(영어)
일반사회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기술	기술, 기술·가정
지리	지리, 사회(지리)	정보·컴퓨터	정보·컴퓨터, 전자계산
물리	물리, 과학(물리)	전기	전기·전자·통신, 공업, 전기,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화학	화학, 과학(화학)	전자	전기·전자·통신, 공업,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생물	생물, 과학(생물)	기계	기계·금속, 공업, 기계,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화공	화공, 공업, 화공·섬유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개정 1994.9.26. 교육부령 제655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16.12.8. 교육부령 제112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2조(개정 2026.3.27. 교육부령 제379호)에 의거 분리·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 연령 : 제한 없음

※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응시 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응시자격)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7)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8)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10)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마 응시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 최종 시험시행일

3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시험 일정 및 장소

시험 단계별	시험 과목		대 상	일 자	시 간	시험 장소
제1차 시험	교육학		제1차 시험 응시자 전체	2026.11.28.(토)	• 1교시 09:00~10:00(60분)	• 시험 장소 공고 : 2026.11.20.(금) 10:00 이후 예정 • 대구광역시교육청 누리집 공고 (알림마당-시험정보-교원 임용 시험)
	전공	A			• 2교시 10:40~12:10(90분)	
		B			• 3교시 12:50~14:20(90분)	
제2차 시험	실기·실험평가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실기·실험 평가 실시과목 응시자	2027.1.14.(목)	• 09:00~	• 시험 장소 공고 : 2026. 12. 29.(화) 10:00 이후 예정 • 대구광역시교육청 누리집 공고 www.dge.go.kr (알림마당-시험정보-교원 임용 시험)
	수업실연		제1차 시험 합격자 (보건/사서/전문상담 /영양 교과 제외)	2027.1.20.(수)	• 09:00~ 【평가시간: 25분】	
	교직적성 심층면접		제1차 시험 합격자 전체	2027.1.21.(목)	• 09:00~ 【평가시간: 25분】	

※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 응시자 예비소집은 별도로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 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 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 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기 시험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할 경우 우리 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합니다.

나 합격자 발표

구 분	일 시	장 소
제1차 시험 합격자	2026.12.29.(화) 10:00 예정	【공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누리집 (알림마당-시험정보-교원 임용 시험)
최종 합격자	2027.2.5.(금) 10:00 예정	

※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우리 교육청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시험 과목 및 유형별 문항 수, 배점, 출제 범위

가 제1차 시험

시험 과목 및 유형			문항 수	배점	출제 범위(비율) 및 내용		
교육학			1교시 (60분)	논술형	1문항	20점	• 교육부 고시 제2021-31호(2021.10.27.)의 [별표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에 제시된 교직이론 과목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 특수(중등),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 교과도 동일하게 적용
전 공	A	2교시 (90분)	단답형	4문항	8점	• 교육부 고시 제2021-31호(2021.10.27.)의 [별표3] '교사 자격 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교과교육학(25~35%):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과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까지 - 교과내용학(75~65%):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 ※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출제 ※ 특수(중등)도 동일하게 적용 ※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 교과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서술형	8문항	32점		
	B	3교시 (90분)	단답형	2문항	4점		
			서술형	9문항	36점		
	소계			23문항	80점		
합계(배점)			24문항	100점			

※ '출제 범위 및 내용'에 기초하여 출제하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에 공개한 『표시과목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하여 출제합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https://www.kice.re.kr>) - 『열린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중등 교사임용시험』(2126283번)에 관련 내용을 탑재합니다.

※ 제1차 시험의 한국사과목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관련 사항은 "5. 응시원서 접수-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배 점			비고	
			일반 교과	실기· 실험교과	보건/사서 /전문상담 /영양		
실기·실험 평가	과학교과		·	40	·	해당 교과	
	체육	공통					· 육상 : 멀리뛰기(자세, 기록) · 배구 : 토스(언더, 오버), 스파이크 · 수영 : 자유형(크롤영법) 50m
		남					· 체조 : 마루운동(무릎 펴 앞구르기 후 뒤굴러 물구나무서기 한 후 손 짚고 앞돌기)
		여					· 체조 : 마루운동(무릎 펴 앞구르기 후 손 짚고 옆돌기 한 후 손 짚고 앞돌기)
	음악						· 청음 · 피아노반주(이조연주) · 시창 및 피아노반주 · 민요창 및 장구반주
	미술						· 평면조형(담채소묘) ※ 물감, 붓, 연필, 콩테, 색연필, 켄트지 등 다양한 채색 표현 용구와 재료 중에서 시험 당일 제공되는 용구와 재료만 사용 · 입체조형 ※ 찰흙, 점토, 종이, 하드보드지, 노끈 등 다양한 입체 표현 용구와 재료 중에서 시험 당일 제공되는 용구와 재료만 사용
	정보·컴퓨터						· 프로그래밍 - 사용언어 : Python - 개발도구 Python 3.x IDLE(https://python.org)
	전문계 교과	전기					· 전기설비 · 자동화설비
		전자					· 전자회로 조립 및 측정 · 마이크로프로세서
		기계					· 선반 가공 또는 밀링 가공 · 기계 제도
화공		· 분석화학 · 기기분석					
※ 세부 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수업실연	·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40	20	·	보건/사서 전문상담 영양 교과 제외	
교직적성 심층면접	·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60	40	100		
합계(배점)			100	100	100		

※ 실기·실험 평가의 세부 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2026. 12. 29.(화)] 시 공고합니다.

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 범위

구 분	출 제 범 위
기본 원칙	•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교육과정까지
중등학교교사 표시과목 교육과정	• 총론: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6-1호(2026.1.21.)까지 • 교과: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6-1호(2026.1.21.)까지
특수학교교사 특수교육 교육과정	• 총론: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6-2호(2026.1.21.)까지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5호, 2024.1.29.)을 적용

《 교과 구분 》

교 과	교 과 과 목	비고
일반 교과	• 중등학교 표시과목(특수 포함)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교과	•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실기·실험평가 교과	• 예체능 교과(체육, 음악, 미술) • 과학 교과(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전문계 교과(전기, 전자, 기계, 화공) • 정보·컴퓨터	

《 참고 사이트 》

구 분	해 당 사 이 트	비고
출제 범위 및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s://www.kice.re.kr)	
교육과정 및 교과서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s://ncic.re.kr),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https://www.textbook114.com)	

※ 인터넷 사이트 해당 누리집으로 링크됨.(클릭 후 바로 연결되며 이하 공고문 동일함)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 및 취소 기간

□ 응시원서 접수 기간 : 2026. 10. 12.(월) 09:00 ~ 10. 16.(금) 18:00 (5일간)

- 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10.16.)은 18:00까지 접수합니다.
 - 단, 원서접수 기간 내 매일 22:00 ~ 24:00 사이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속 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수수료 결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접속 폭주로 접수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의 이유로 마감 시간까지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 원서 접수 기간 중에는 원서를 접수, 수정, 접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취소 기간 : 2026. 10. 17.(토) 13:00 ~ 10. 19.(월) 18:00 (3일간)

- ▶ 취소 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지원자가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취소 기간에는 추가 접수, 기존 원서입력 사항 수정이 불가합니다.
- ▶ **접수 마감 후 취소 기간에 취소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복지원에 관한 사항

□ 일반 지원자

- 중복지원 금지
 - 지원자는 16개 시·도에서 동일한 일자에 시행하는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위탁된 국립 및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 다만, 대구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지원자에 한하여 동시지원 방식으로 위탁한 대구광역시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에 동시 지원이 가능함.(동일 과목에 한함)

《 일반 공·사립 동시 지원 예시 》

· 대구시 공립 (국어) 1곳 지원 + 대구시 동시지원 허용 사립법인 (국어) 1곳 지원

- 중복 지원을 금지함에도 중복 지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일반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

-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립학교 지원자 중 희망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 임용시험을 위탁한 사립학교법인 중에서 공·사립 동시지원 허용 법인 **1곳만 동시지원 가능**
※ 타 시도 교육청과 중복지원은 절대 불가함
- ▶ 시행 절차: 공립 및 사립 지원(인터넷 접수) → 공립 1차 시험 응시 → 공립 1차 시험 불합격 → 공립 1차 시험 성적으로 사립에서 선발 배수 미달 시 다시 한 번 합격 여부 결정
※ 동시지원 가능 법인과 해당과목 : “2027학년도 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위탁 시행계획 공고문” 「나. 공·사립 동시지원 가능 법인 현황」 참조

《 응시원서 중복 지원 관련 주의 사항 》

- 중복 접수된 응시원서는 **최초 접수된 응시원서만 인정**되며, 그 외 응시원서는 응시원서 취소 기간 전에 취소됩니다.

□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지원자

○ 중복지원 가능

- 장애인 구분 선발 과목 지원자는 원서 접수 기간에 2개 이내 시·도의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응시는 한 곳에서만 가능)

《 장애 구분 모집 지원 예시 》

- A시 장애인 구분 공립 (국어) 1곳 지원 + B도 장애인 구분 공립 (국어) 1곳 지원
- A시 장애인 구분 공립 (국어) 1곳 지원 + B도 일반 구분 공립 (국어) 1곳 지원 불가능

○ 중복지원자의 실제 응시 시도 선택

- 2개 시도에 **중복지원한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지원자는 원서접수 취소 기간 내에 미응시할 1개 시도의 원서접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26. 10. 17.(토) 13:00 ~ 10. 19.(월) 18:00

-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분야에 대해서는 원서접수 마감일(5일차)까지의 경쟁률을 원서접수 취소기간 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분야 경쟁률 공개 2026. 10. 17.(토) 10:00 대구광역시교육청 누리집

《 주의 사항 》

- **취소하지 않을 경우, 최초 접수한 시도의 응시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실제 응시할 1개 시도의 응시원서를 취소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소 과정 중 부주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예시 》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분야의 원서를 A도 및 B시 중복 접수 시 (A도 접수 후 B시 접수)

응시자가 취소기간 내		응시자가 취소기간 내	
미응시할 시·도의 원서접수를 직접 취소한 경우		미응시할 시·도의 원서접수를 취소하지 못한 경우	
원서접수 취소기간	최종 응시	원서접수 취소기간	최종 응시
미응시할 A도의 원서접수를 직접 취소	→ B시 시험 응시	미응시할 시·도의 응시원서를 취소하지 못함	→ A도 시험 응시 *최초 접수한 시도의 응시원서만 유효

다 접수 방법

□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대구광역시교육청)을 통하여 접수

-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https://edurecruit.go.kr/> - "중등교원" - 대구광역시교육청
- 구체적인 응시원서 접수 방법은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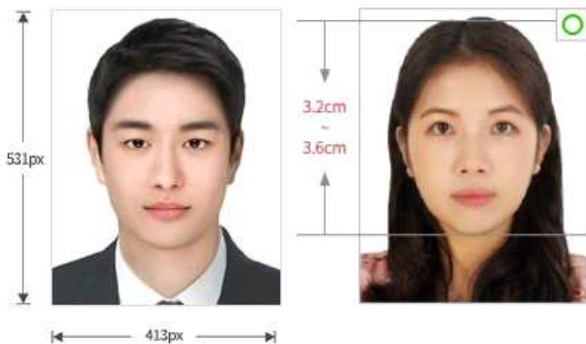
□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컴퓨터(PC) 환경

- 운영체제(OS): 한글 Windows(한글 Windows 11 권장)
- 인터넷 브라우저: PC 버전 Edge, Chrome
- 모바일, 태블릿PC 기반 환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 사용자 컴퓨터(PC) 환경으로 인하여 원서 접수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다른 컴퓨터(PC)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등록

- 사진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용 규격 사진
- ※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여권 사진 규격 안내" 참고
- ▷ 안내 바로가기: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 사진 예시 》



□ 사진 파일 규격

-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규격 사진**
- 가로 395~413픽셀(pixel)(3.5cm) × 세로 507~531픽셀(pixel)(4.5cm)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흰색 배경 상반신 정면
-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
- 얼굴이 가려지면 안 됨 (이마, 턱, 얼굴 윤곽, 눈, 눈썹)
- 시험일 본인 확인 가능한 사진
- 파일 형식(jpg, gif, png, jpeg)
- 파일 크기(1MB 이하)

★ 사진파일 이름에 특수문자가 있으면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사용가능 사진	사용불가 사진
■ 흰색배경(얼굴크기 3.2cm~3.6cm) 	■ 상반신 사진 사용금지  ※ 얼굴 크기 3.2cm 미만의 상반신 사진, 모자 등 착용 사진은 사용 불가

《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진 유형 》

- 본인 확인이 곤란하거나, 촬영한 지 6개월이 지난 사진
- 사진 규격, 사진 파일 '확장자 및 크기'에 맞지 않아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선명도가 낮은 사진
- 포토샵 등으로 대폭 수정한 사진

※ 대리 응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실(장)에서 사진과 실물이 상이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지문 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응시수수료 납부

- 납부 금액: 공립 25,000원(공립만 또는 공사립 지원자), 사립(사립만 지원자) 0원
 ※ 공립과 사립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는 공립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지원자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응시수수료가 없음
- 납부 방법 :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은행 계좌이체”의 전자결제방식으로 납부 (본인 이외 타인 카드도 가능하나,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불가)
-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전자결제 대행서비스 계약 체결 업체인 (주)케이지 이니시스의 명의로 청구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원서 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제2차 실가실험과목(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체육 음악 미술 정보컴퓨터 전기 전자 기계 화공) 응시자는 응시 수수료 10,000원을 실가실험평가 당일에 납부하여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대상 및 신청

- 응시수수료를 면제(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 (응시료 면제자)에 체크하고 응시료 면제 구분 및 해당 동의서에 “요구”를 선택한 후

[자격 확인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검증을 하여야 합니다.

- 검증이 불가하거나, 자격확인 요청이 "요구하지 않음"일 경우 결제를 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붙임3]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같이 스캔 파일로 첨부제출 하여야 응시수수료 면제(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원서접수 마감일 [2026. 10. 16.(금)]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출 서류 (검증이 불가하거나, 자격확인 요청이 "요구하지 않음"일 경우)	•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붙임 3 서식] • 면제 대상자 증빙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검증이 불가하거나, 자격확인 요청이 "요구하지 않음"일 경우)	• 원서 접수 기간 내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로 제출 ※ "바.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 서류" 참고

□ 수험표 출력

- 수험표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채용 분야-중등교원-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2026. 11. 20.(금) 10:00부터 출력 가능하며**, 시험 당일 [2026.11.28.(토)] 신분증과 함께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수험표는 반드시 **컬러로 출력**하여야 하며, **이면지 사용과 메모(낙서 등)를 금지**합니다.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증은 수험표가 아닙니다.)
- 수험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무작위로 부여합니다.

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

- 인정 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 인정 범위: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인증등급(3급)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기존 5년 제한 성적 인정 기간 폐지**
- 제출 방법
 - 응시원서 접수 전 **인증등급 취득자**: 응시원서에 합격등급, 인증번호, 인증(합격)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인증등급 취득예정자**: 응시원서에 시험 종류, 접수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반드시 **제8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완료 후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합니다. (응시수수료는 환불 불가)**

	< 3급 이상 취득자 > 「회차」를 선택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취득여부 확인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검증 취득여부 확인요청 버튼 클릭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체크박스를 체크(☑)한 후 취득한 지원자 본인의 「합격등급」을 선택하고 증빙자료(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파일을 첨부
	< 3급 이상 취득예정자 > - 시험의 해당 회차(㉠) 확인 - 시험종류: ㉠“심화” 선택 - 접수번호: ㉢접수번호 숫자 10자리 입력 ※ 본인 접수증 확인 ※ 지원자 본인의 증빙자료(한국사능력 검정 시험 원서접수 확인증) 파일을 첨부

□ 유의 사항

- 추후 우리 교육청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 여부를 응시자가 직접 입력한 "인증번호"로 해당 시험기관에 조회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확인 후 인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취득예정자의 경우 실제로 시험에 접수하여 받은 접수번호 기입(핸드폰번호, 임의번호 입력 금지)
-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 등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게시**합니다.
-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마 인터넷 접수에 대한 일반원칙

- 접수 시 지원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 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지원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고 응시원서 입력 사항 [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입력 내용의 누락이나 오류[특히, 가(산)점]로 인한 합격자 결정 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으며, 부당 가(산)점으로 합격한 자의 합격은 취소합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등의 해당 사항을 허위로 입력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입력된 내용과 일치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지정하는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 내용 조회 또는 확인 과정에서 응시원서상의 기재 사항과 상이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 및 가(산)점 확인에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적 무효처리 및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접수 시 입력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빙 서류 등을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스캔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아래 "바.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 서류" 참고)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는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바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 서류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 내용과 동일한 각종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반드시 파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대상자	스캔 파일 첨부 제출 서류
지원자 전원	• 교원자격증(확인이 안되는 경우) 또는 교사(원)자격(증) 취득예정증명서(졸업예정자) 1부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취득 예정자의 경우,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소재한 시·도교육청에서 『교사(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함. [민원처리기간(15일)을 고려하여 신청] ※ 단, 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검증 완료 시 제출(첨부) 생략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 또는 제80회 원서 접수 확인증 1부. ※ 단, 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검증 완료 시 제출(첨부) 생략
체육과목 가산점 대상자 (체육과목 지원자에 한함)	• 경기 입상 또는 지도 실적증명서 1부 ("6. 가산점" 참고) -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대한○○○협회, 대한○○○연맹, 대한○○○회)장이 발행한 증명서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취득한 실적만 유효함.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	•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7. 가점" 참고)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	• 의사상자 증명서 1부("7. 가점" 참고)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장애인 구분 모집 지원자	• 장애인 증명 서류 사본 1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등에서 해당 서류 택 1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신청자	•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1부 (제1차 시험용) [붙임 2-1, 2-2서식] - 신청서 작성 후 날인 또는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의사 진단(소견)서 - "1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다.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제출 서류』 참고 《유의 사항》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제출 대상자	스캔 파일 첨부 제출 서류
	- 편의 제공 신청 시 "1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참고 -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등 <u>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험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없음</u>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대상자	•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1부 [붙임3]서식 - 신청서 작성 후 날인 또는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면제 대상자 증명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 1부 ※ 단, 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검증 완료 시 제출(첨부) 생략 《 유의 사항 》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대상자이어야 함.

《 스캔 파일 첨부 제출 방법 》

- 파일명을 『지원자 성명-제출 서류명』으로 저장하여 첨부
 - ▷ 예시: 홍길동-경기입상 증명서.jpg, 홍길동-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jpg, 홍길동-의사 진단서.jpg, 홍길동-응시수수료 면제.jpg

《 임용시험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관련 문의 안내 》

- 문의 시간 : 09:00~18:00 사이 운영. 단, 점심 시간(12:00~13:00) 제외
-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 (053) 231-0382
대구광역시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 고사관리실 ☎ (053) 231-0370, 0387

6 가산점

□ 가산점 대상 및 부여

부여 대상 및 내용		가산점	비고
체육과목 가산점 (입상 경력 및 지도 실적 가산점)	• 올림픽대회,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 또는 3위 이내의 입상지도 경력이 있는 자	5점	※ 체육과목에 한함 ※ 정식종목에 한함 ※ 동계대회 포함 ※ 장애인대회 포함 (단, 장애분야 응시자만 인정) ※ 중복 시 최고점 1개만 선택
	•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에서 3위 이내의 입상 경력이 있는 자	3점	
	•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정식종목에서 3위 이내의 입상지도 경력이 있는 자	3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3급 이상 인증서 취득자이면서 제1차 시험 과목별(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의 성적 총점에 상기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의사상자 가점과는 별도임)
- 전국체육대회 입상실적 증빙서류는 2018년 이후 발급한 원본검증번호가 있는 증명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 적용 기준일은 원서 접수 마감일(2026. 10. 16. 금)입니다.

7 가점

가 대상자별 가점 부여 비율

구 분	가점 부여 비율	비고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u>10% 또는 5%</u> 를 가산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의사상자 등 가점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u>5% 또는 3%</u> 를 가산	

나 가점 부여 세부 내용

구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지원대상 - 의사자: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가점 부여	-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 ('6.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 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 ('6.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 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가점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 만점의 5% - 의상자(1~6급)의 배우자, 자녀: 만점의 3%
선발 상한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 지원 대상자 수는 제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 해당 시험 합격자 수의 30%를, 최종 합격자의 경우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3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 수는 제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 해당 시험 합격자 수의 10%를, 최종 합격자의 경우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1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구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의사상자 등 가점
소수 선발 과목	-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 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라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습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9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도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습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가점 신청자 유의 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에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원서 접수 마감일(2026. 10. 16. 금) 현재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에 취업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의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5% 또는 3%)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원서 접수 마감일(2026. 10. 16. 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8

합격자의 결정

구 분	합격자의 결정
제1차 시험 합격자	-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과 가산점, 가점을 합산한 제1차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 제1차 시험 점수 = 1차 시험 성적 + 가산점 + 가점 -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 인원의 1.5배수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한다.
최종 합격자	- 최종 합격자는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과 제2차 시험의 성적에 각각 가점을 더하여 합산한 최종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 최종 점수 = [1차 시험 성적 + 가점] + [2차 시험 성적 + 가점] ※ 최종 합격자 결정을 위한 최종 점수에 가산점은 반영하지 않음. -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 과목별 선발예정 인원 이내로 한다.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1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제2차 시험의 성적이 높은 사람 - 3순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복무 만료) 예정자 포함] - 4순위: 수업실연(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5순위: 교직적성 심층면접(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6순위: 전공(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7순위: 교육학(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동점자 처리기준의 시험(또는 과목) 성적은 가점을 제외한 시험 성적입니다. - 제2차시험에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그 밖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이 각 과목별 해당 배점의 40퍼센트 미만(과락)인 사람 및 각 시험 단계별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한 사람은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9

최종 합격의 취소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 부정행위자(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불공정행위자
- 각종 증빙 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 가점/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닌 자가 가점/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 교사(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7년 2월 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단, 발급기관의 사유로 교원자격증발급이 늦어지는 경우 제외**)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외국 영주권자로서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빙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 관련 규정에 의한 증빙 서류 미제출자 포함)
- 병역복무 중인 자로서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나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단, 제출자는 임용유예 가능**)

10 시험 시행 일반원칙

-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나. 제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제1차 시험의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 다. 합격자 성적 사정은 지원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인터넷 원서 입력사항)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처리하며, 만약 응시원서의 기재 내용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라.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 순위'("8. 합격자의 결정" 참조)의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로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하는 자(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에 한합니다.
- 마. 공고된 시험 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대구광역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누리집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바.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교원수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사. 시험 단계별 및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한 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 아.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에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1 응시자 유의 사항

- 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의 지필시험은 반드시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연필, 번지거나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 답안을 수정할 경우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합니다.(답안 수정 시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 사용 불가)
- 나. 시험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휴대전화, 블루투스기기, 이어폰, 태블릿PC, 넷북, 스마트워치, 스마트 안경 등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시작 후 시험실(장) 내에서 이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 등으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 (가방 속 및 시험실 내 별도 장소에 보관한 경우도 부정행위자 등으로 처분하며, 감독관 수거가 끝난 후 시험실에 도착한 응시자일 경우라도 시험 시작 전에 자진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 다.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미지참자는 시험 당일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시험장의 지정된 장소에서 재발급 받아야 하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주민등록번호 미표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하여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모바일 신분증 제외)
- 라. **검은색 볼펜 등 필기구는 응시자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기타 보조기구(귀마개, 모자 등) 착용은 불허합니다.
- 마.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험 응시 중에 발생하는 건강상 문제 및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해당 시험 시간 중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단, 화장실사용 편의제공을 신청한 임신부 등에 한하여 허용)
- 바. 시험 당일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 등록차량 제외)
- 사. 응시자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 완료 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응시자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아.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 등으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및 5년간 시험 응시 자격 정지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①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②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③ 통신기기, 스마트 안경 등 전자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행위(또는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⑤ 병역사항,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②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실가·실험결과물을 변형하는 행위
- ③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장)에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 시 이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소지(반입)금지 물품

휴대전화, 블루투스기기, 이어폰, 스마트워치(밴드)·스마트센서, 스마트 안경, 태블릿PC, 노트북, 넷북, 디지털 카메라, MP3,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시계, 전자계산기, 라디오, 전자담배 등 모든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 스마트 안경: 시력교정용 안경 형태를 포함하여 촬영, 녹음, 통신, 정보검색 기능이 탑재된 안경형 기기

※ 감독관은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시계를 반입하는 경우, 전자식 화면표시가 없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바늘시계)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 ④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자. 상기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 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별도 안내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dge.go.kr/>) [알림마당 - 시험정보 - 교원 임용 시험]

차.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용시험 관련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열람·게시·공유하는 행위 등은 관계 법령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가 편의 제공 대상

- 2027학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지원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임신 또는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으로 인해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나 편의 제공 신청 절차

- 『다.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제출 서류』 및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확인	·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해당 사항 확인 [장애유형(정도), 편의 제공 내용, 증빙 서류 등]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신청	· 원서 접수 시 장애인(임신부 등) 지원자 입력 화면에서 본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편의 제공 요청 유무' 항목 입력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에 기재)				
증빙 서류 제출 (의사 진단서 등)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 제공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신청서와 함께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table border="1"> <tr> <td>- 제출 서류</td><td>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용)[붙임 2-1 서식],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용)[붙임 2-2 서식], 장애인 증명 서류(장애인에 한함), 의사 진단서 등</td></tr> <tr> <td>- 제출 기간</td><td>응시원서 접수 기간과 동일</td></tr> </table> ※ 장애유형별 증빙 서류는 『다.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제출 서류』 참고 ※ 제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 "13. 각종 증빙 서류 제출" 참고	- 제출 서류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용)[붙임 2-1 서식],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용)[붙임 2-2 서식], 장애인 증명 서류(장애인에 한함), 의사 진단서 등	- 제출 기간	응시원서 접수 기간과 동일
- 제출 서류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용)[붙임 2-1 서식],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용)[붙임 2-2 서식], 장애인 증명 서류(장애인에 한함), 의사 진단서 등				
- 제출 기간	응시원서 접수 기간과 동일				
증빙 서류 확인 및 제공 여부 안내	·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기준에 의한 증빙 서류 확인 · 대구광역시교육청 누리집 또는 전화연락 등으로 제공 여부 및 세부 사항 안내				

다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제출 서류

□ 장애유형별 제1차 시험 편의 제공 내용

장애 유형 및 정도			편의 제공 내용	제출 서류	비고
지체 장애	상지	공통	· 확대 문제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답안 작성용 컴퓨터	· 편의 제공 신청서 · 장애인 증명 서류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 시간 연장(1.2배)	·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기존 4~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편의 제공 신청서 · 장애인 증명 서류	기존 1~6급
뇌병변 장애	공통		· 확대 문제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답안 작성용 컴퓨터 ·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 편의 제공 신청서 · 장애인 증명 서류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 시간 연장(1.2배)	·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시험 시간 연장(1.2배)	· · 의사 진단서	기존 4~6급
시각 장애	공통		· 확대 문제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답안 작성용 컴퓨터	· 편의 제공 신청서 · 장애인 증명 서류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5배) · 음성 지원 컴퓨터	·	기존 1~2급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5(2024.1.29.)에 따라 제작] ·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의사 진단서	기존 3급 2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기존 3급 1, 2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5배) · 음성 지원 컴퓨터 ·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5(2024.1.29.)에 따라 제작] ·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의사 진단서	기존 4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기존 4, 5급 1호
		· 두 눈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하로 감소한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	기존 5급 2호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 의사 진단서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 이하
		· 위 조건 외의 시각 장애인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기존 6급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편의 제공 신청서 · 장애인 증명 서류	기존 2~6급
청각 장애					

※ 확대 문제지는 A3 규격의 13point, 18point, 30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 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위 시각 장애의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포함한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증빙 서류 제출을 면제받은 시각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자라도 편의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세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의사 진단서는 발급 시 **참고**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장애 유형 기존 등급 등의 조회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임신부 등 제1차 시험 편의 제공 내용

구 분	편의 제공 내용	제출 서류	비고
임신부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 책상 높낮이 조절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편의 제공 신청서 - 의사 진단(소견)서	임신부 상태를 고려하여 편의 제공 내용 결정
과민성대장증후군· 방광증후군 환자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편의 지원 신청서 - 의사 진단서	진단서 내용을 고려하여 편의 제공 내용 결정

※ 의사 진단(소견)서는 **참고**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장애유형별 제2차 시험(수업실연 및 교직적성 심층면접) 편의 제공 내용

장애 유형 및 정도			편의 제공 내용	비고
지체 장애	상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기존 1~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기존 1~6급
뇌병변 장애	공통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장애정도가 심한 자		·평가 시간 1.5배 연장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기존 4~6급
시각 장애	공통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점자 사용이 필요한 자		·관련 서식 점자 지원 ·음성 지원 컴퓨터	기존 1~2급, 3급 2호, 4급 2호 중 점자 사용을 인정받은 자
	점자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자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평가 시간 1.5배 연장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제2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장애유형별로 편의 제공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제2차 시험용)[붙임 2-3 서식], 증빙 서류[장애인증명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증빙 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 제출한 증빙 서류로 갈음함.

라 시험 시간 연장

□ 제1차 시험

시험 단계	시험 과목		시험 시간		
			일반 응시자	1.2배 연장자	1.5배 연장자
제1차 시험	교육학		09:00 ~ 10:00(60분)	09:00 ~ 10:12(72분)	09:00 ~ 10:30(90분)
	전공	A	10:40 ~ 12:10(90분)	10:52 ~ 12:40(108분)	11:10 ~ 13:25(135분)
		B	12:50 ~ 14:20(90분)	13:20 ~ 15:08(108분)	14:05 ~ 16:20(135분)

□ 제2차 시험

시험 과목	대 상	시험 시간	
		일반 응시자	1.5배 연장자
수업실연	·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청각장애	평가 25분	평가 37.5분 (37분 30초)
교직적성 심층면접		평가 25분	평가 37.5분 (37분 30초)

※ 제2차 시험(수업실연, 교직적성심층면접)의 시험시간 연장은 평가 시간만 연장함

마 편의 제공 신청 시 유의 사항

- 상기 『다.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제출 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 제공 대상 여부, 편의 제공 신청 가능 내용 및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의 해당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확인
- ▶ 의사 진단(소견)서의 해당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기재
- ※ 의사 소견서는 임신부에 한함

- 시험 시간 연장, 점자 문제지, 점자 답안지, 확대 문제지, 음성 지원 컴퓨터 등의 편의 제공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인 응시자 또는 임신부 등 편의 제공요청 입력화면에 신청한 후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신청서[붙임 2-1 또는 붙임 2-2 서식] 및 증빙 서류 등을 스캔하여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점자 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 지원 컴퓨터를 신청한 자는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점자 문제지는 음성 지원 컴퓨터 신청자(시각 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단, 문제 풀이 시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문항의 경우, 신청이 없어도 점자 문제지를 제공할 수 있음)

- 음성 지원은 센스리더 Pro/Next(ver 8.7 이상) 환경으로 제공합니다.
-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 사항은 원서 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합니다.
-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 당일 감독관의 사전 확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사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아래 **참고**의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
-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도 인정됩니다. (임신사실확인서 불인정)
-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다음의 경우 편의 지원 제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신청한 내용과 의사 진단(소견)서 내용이 다를 경우
 - ▶ 증빙서류 [의사 진단(소견)서]의 형식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 제2차 시험 관련 편의 제공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접수합니다.

참고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

- 발급 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의사 진단서가 아닌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불인정
 - ※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 진단(소견)서도 인정함
 - ※ 의사 소견서는 임신부에 한함
- 발급 일자: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 이번 시험의 경우 2024년 10월 17일(목) 이후에 발급된 의사 진단서
-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예시표 표시 내용 ①)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 사항(예시표 표시 내용 ②)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예시표 표시 내용 ③)

※ 임신부의 경우에는 임신주수, 편의 제공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 제공 신청 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 문제지, 시험 시간 연장, 음성 지원 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 문제지 및 시험 시간 연장, 음성 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 유형·정도		발급 내용 예시
시각 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자	상기인은 ①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②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③ 점자 문제지, 시험 시간 연장, 음성 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	상기인은 ①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②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	상기인은 ①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②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 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③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임신부		상기인은 ① 임신 00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산모로서, ② 자궁의 확대에 의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③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및 책상 높낮이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환자		상기인은 ①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로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환자로, ② 빈뇨, 절박뇨 증상으로 시험 도중 긴장하면 빈뇨, 절박뇨 증상이 나타남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③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및 좌석 간격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13 각종 증빙 서류 제출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가 각종 증빙 서류 제출 대상 및 기간

대상자	제출 기간	제 출 처	제출 방법
제1차 시험 합격자	2026. 12. 30.(수)~ 2026. 12. 31.(목)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 대구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 임용 담당자 앞(우편번호 42123) 전자메일: valen9906@korea.kr	•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 - 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붙임 1]의 증빙 서류 제출 목록표에 기입·편철하여 제출

- 증빙 서류 제출 대상자: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각종 제출(증빙)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한 내용과 일치되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 ※ 단, 교원자격증은 사본 제출, 의사 진단서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2024년 10월 17일 이후 발급)

나 제출 서류

□ 공통 사항(제1차 시험 합격자 전원 제출)

제출 대상	제출 서류
• 2027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 사범계대학 졸업 예정자 - 비사범계대학 졸업 예정자 - 대학원 졸업 예정자 - 졸업 예정자로서 복수 과목 응시자	• 교사(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원본) 1부 • 교사(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원본) 또는 해당 과목이 표기된 교직과정 이수 예정확인서(원본) 1부(택1) • 교사(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원본) 1부 • 복수전공 이수(예정) 증명서(원본) 1부
※ 교사(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원본)는 자격 및 표시과목(복수 과목 포함)과 법정 해당 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 2] 자격기준 제○호”로 표기된 것만 인정함.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기관장 확인)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취득 예정자의 경우,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소재한 시·도교육청에서 『교사(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원본)』를 발급받아 제출함.	

□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해당자 제출

제출 대상	제출 서류
• 병역의무 이행자 - 병역필로 표기한 자	• 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동점자 처리 우선 순위 적용 시 활용
- 병역 복무 중인 전역 예정자 ※ 원서 접수 마감일(2026. 10. 16.(금)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복무 만료) 예정인 자	• 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전역(복무 만료) 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1부 ※ 동점자 처리 우선 순위 적용 시 활용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자 - 원서 접수 마감일(2026. 10. 16.(금))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 서류 일체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제2차 시험용) [붙임 2-3 서식], 장애인 증명 서류, 의사 진단서(해당자) ※ 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원본 서류 각 1부(단, 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제출)

14 시험 관련 정보공개 안내

가 응시원서 최종 접수 결과 공개

- 공개 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dge.go.kr>)
- 『알림마당-시험정보-교원 임용 시험』
- 공개 일시 : 2026. 10. 21.(수) 10:00 이후 예정

나 시험 문제 공개

- 공개 범위
 - 공 개: 제1차 시험 문제
 - 비공개: 제2차 시험 문제
- 공개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https://www.kice.re.kr>)
- 「자료마당-기출문제-중등교사임용시험」
- 공개 기간 : 제1차 시험 시행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일정 기간

다 시험 정보 비공개

- 제1차 시험 : 모범 답안 및 채점 기준표, 문항별 취득 점수 등
- 제2차 시험 : 문제지, 모범 답안 및 평가 기준표, 문항별 취득 점수 등

라 합격선 및 개인별 성적 공개

- 합격선 공개 : 제1차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시 공개
 ※ 비공개 : 개인별 석차, 합격 인원 2명 이하 과목의 합격선
- 개인별 성적 공개 : 응시자 본인의 시험 단계별 성적 공개

공개 성적	공 개 기 간	비고
제1차 시험 성적	2026. 12. 29.(화) ~ 2027. 1. 12.(화)	
제2차 시험 성적	2027. 2. 5.(금) ~ 2027. 2. 12.(금)	

※ 시험 단계별 또는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하거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으로 결시처리된 자 및 부정행위 처리자는 성적 확인 불가

- 공개 장소 :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대구광역시교육청(<https://edurecruit.go.kr>)

마 개인별 답안지 등 열람

- 열람 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 우리 시교육청이 정하는 일정 기간
- 열람 범위: 1차 시험 응시자 본인의 답안지 열람만 가능(필사, 복사, 촬영 등 불가)
- 열람 절차·방법: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열람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안내

15 2027학년도 임용시험부터 달라지는 제도 안내

가 실기실험평가 교과 내용 변경

교과 구분	실기평가 출제범위 및 내용	
	변경 전(2026학년도)	변경 후(2027학년도 이후)
정보· 컴퓨터	<프로그래밍> ○ 요구사항(입력 값, 출력 값, 처리조건 등 포함) 제시 후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래밍 능력 평가 - 사용언어 : C 또는 Python - 개발도구 : Dev-C++(오픈소스기반 개발도구) Python 3.x IDLE(https://python.org)	<프로그래밍> ○ 요구사항(입력 값, 출력 값, 처리조건 등 포함) 제시 후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래밍 능력 평가 - 사용언어 : Python - 개발도구 : Python 3.x IDLE(https://python.org)
미술	○ 드로잉(60분) ○ 평면조형_채색화(150분) ○ 입체조형(120분)	○ 평면조형_담채소묘(180분) ○ 입체조형(120분)

16 2028학년도 임용시험부터 달라지는 제도 안내

※ 다음 사항은 응시자의 시험 준비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2028학년도 대구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고 시까지 우리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실기시험평가 교과 내용 변경

교과 구분	실기평가 출제범위 및 내용			
	변경 전(2027학년도)		변경 후(2028학년도 이후)	
체육	육상	멀리뛰기(자세, 기록)	육상	허들(60m)
	수영	자유형 50m(크롤 영법)	수영	자유형 50m(크롤 영법)
	배구	토스(언더, 오버), 스파이크	농구	드리블 및 레이업슛
	체조	마루운동 (남자) 무릎 펴 앞구르기 후 뒤굴러 물구나무서기 한 후 손 짚고 앞돌기 (여자) 무릎 펴 앞구르기 후 손 짚고 옆돌기 한 후 손 짚고 앞돌기	체조	마루운동 (남자) 무릎 펴 앞구르기 후 뒤굴러 물구나무서기 한 후 손 짚고 앞돌기 (여자) 무릎 펴 앞구르기 후 손 짚고 옆돌기 한 후 손 짚고 앞돌기

- 붙임 1.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빙 서류 제출 목록표 서식 1부.
 2-1.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용] 서식 1부.
 2-2.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용] 서식 1부.
 2-3.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제2차 시험용](수업실연·교직적성 심층면접) 서식 1부.
 3.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서식 1부. 끝.

[붙임 1] <서식>

2027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빙 서류 제출 목록표

■ 인적 사항

응시과목	수험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제출 서류 내용

제출 대상		제출 여부 (제출 시 ○표)	제출 서류
1. 공통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 교사(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원본) 1부 ※ 2027년 2월말 졸업예정자 ※ 단, 최종 합격 후 2027년 2월말까지 교원자격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2. 병역 의무 이행자	병역필로 표기한 자		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병역 복무 중인 전역 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원본) 1부 ※ 원서 접수 마감일(2026.10.16.)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복무 만료) 예정인 자
3.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자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제2차 시험용) [붙임 2-3 서식] - 장애인 증명 서류, 의사 진단서(해당자) 등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 붙임 서류
4. 개명한 자			주민등록표 초본

[붙임 2-1] <서식> [제1차 시험용]

2027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

■ 인적 사항

응시과목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 자택()

■ 장애(상)유형 및 정도, 편의 제공 신청 사항 (해당되는 장애유형 옆에 장애 정도를 기재)

장애유형		장애정도	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란에 "○"표시)												
			시간 연장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택1)						기타				
			1.2 배	1.5 배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컴퓨터(PC) 음성지원 답안 작성	확대 문제지 답안 작성	글자 13P	글자 18P	글자 30P	축소 문제지 (71%) (확대 독서기 사용자)	별도 시험실 (좌석 간격조정)	휠체어 전용 책상 (휠체어 사용자)	수화 통역사 배치	서면안내 자료제공
지체 장애	상지														
	하지														
뇌병변장애															
시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하거나 점자 사용 필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점자 사용 필요 없음														
청각장애															
보조 공학기기 지참 허용 및 특이 사항		※ 기재(예: 확대 독서기, 확대경 지참 등)													

※ 공고문을 참조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별로 신청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

(☒) 표시는 지원 불가

- ※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는 1가지만 선택 가능함. 다만, 확대문제지 및 축소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답안작성PC 중복 선택 가능함.
- ※ 시각장애인이 음성 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답안은 PC로만 작성함.(점자 문제지의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단, 문제 풀이 시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문항의 경우, 신청이 없어도 점자 문제지를 제공할 수 있음.)
- ※ 수화통역사 배치를 희망하는 청각장애인은 별도시험실 제공될 수 있음.

본인은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 편의 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인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 붙임 1. 장애인 증명 서류[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사본 1부.
2. 의사 진단서[편의 제공 신청 시 의사 진단서 제출 해당자] 1부.

2026.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 2-2] <서식> [제1차 시험용]

**2027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 인적 사항

응시과목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 자택()

■ 편의 제공 신청 사항

유형	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란에 '○'표시)	
	○ 별도 시험실 배정 ○ 좌석 간격 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책상 높낮이 조절
임신부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환자		
※ 편의 제공 신청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이동 및 화장실 대기시간(2인 동시 사용금지), 감독관 소지품 검사 등]은 시험 시간에 포함됨.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신청한 응시자와 같은 시험실에 배정될 수 있음

본인은 편의 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인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의사 진단(소견)서 1부.[의사 소견서는 임신부에 한함]

2026.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 2-3] <서식> [제2차 시험용](수업실연·교직적성 심층면접)

2027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

■ 인적 사항

응시과목		수험번호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 자택()

■ 장애(상) 유형 및 정도, 편의 제공 신청 사항 (해당되는 장애유형 옆에 장애 정도를 기재)

장애유형	○○장애	장애 정도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편의 제공 신청 내용	<작성 예시 -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작성> ○ 하지 지체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므로 계단 이용 불가 ○ 청각장애인으로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 시간 1.5배 연장 ○ 청각장애인으로 수화통역사 배치 ○ 청각장애인으로 면접 질문 및 응시자 답변을 노트북(PC)으로 입력하여 면접 진행 ○ 청각장애인으로 보청기 등 소리증폭장치 지참 허용 ○ 청각장애인으로 평가위원과의 거리를 가깝게 조정 ○ 시각장애인으로 과제 작성 시 주어지는 주제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 ○ 뇌병변장애인으로 과제를 손으로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노트북(PC) 제공 ○ 기타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항		

※ 공고문을 참조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별로 제2차 시험(수업실연·교직적성 심층면접)에 신청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필요한 편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함.

본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 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인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 증명 서류[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사본 1부.
(단, 제1차 시험 시, 미제출자에 한함)

2. 의사 진단서[편의 제공 신청 시 의사 진단서 제출 해당자] 1부.

※ [붙임1, 붙임2] 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 제출 서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제출

2026.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 3] <서식>

2027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사회취약계층 등 응시자만 해당)

■ 응 시 과 목 :

■ 생 년 월 일 :

■ 성 명 :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응시자 해당 여부란에 "○" 표시)

면 제 대 상	응시자 해당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류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류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21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의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상기와 같이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를 신청합니다.

붙임 면제 대상 증빙 서류 1부.

2026.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